

해양경찰법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51
----------	-------

발의연월일 : 2019. 1. 11.

발의자 : 오영훈 · 이개호 · 정세균
박완주 · 우원식 · 강창일
윤준호 · 서삼석 · 이양수
김현권 · 박주현 · 황주홍
의원(12인)

제안이유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해양경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해양경찰청장 임명과 국가 해양관리 차원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 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또한,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해양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해양사고의 대응, 해양영토수호 및 해양치안질서유지,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 및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함(안 제4조).
- 마. 해양경찰의 주용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고,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 작전 수행,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 활동, 직무 관련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그 직무로 함(안 제15조).

자.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한다 등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차. 해양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지휘·통신체계, 제도개선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함(안 17조).

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해양경찰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을 위한 제청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의요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의 불합리한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

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청장 등

제12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13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2. 해양경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제14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경

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계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

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지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 관련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수행)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

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 제17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요청 이외에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단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국민 소통·참여의 확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의 과정에 국민 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소통·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제20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

찰장비 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 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